

#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7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5월 17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5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과장)

#### 가.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공유수면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안 제2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가산금(안 제3조 ~ 제4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및 조정(안 제5조 ~ 제6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1부.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5. 17.)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5. 7.
- 회부일자 : 2024. 5. 17.
- 상정일자 : 2024. 5. 17.

### 2. 제안이유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공유수면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안 제2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가산금(안 제3조 ~ 제4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및 조정(안 제5조 ~ 제6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안 제7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상위법령의 개정<sup>1)</sup>에 따라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에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생략)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2. 3. 1.>

- 안 제4조(가산금의 징수)에서는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
- 안 제5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에서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해진 기준 외의 감면비율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우리 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식을 정하여 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 현황

구 분	연 도	부과 건수	부과 금액	면적
공유수면 점용·사용	2022년	540건	275,982천원	598,126㎡
	2023년	290건	142,448천원	664,704㎡
	2024년	333건	244,415천원	694,264㎡

※ 정기분, 매년 6월 부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



- 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시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5호·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인(제1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2.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을 말한다.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제15조(분할납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가산금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제13조제5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

용료·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제16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붙임 2]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279
----------	-----

제출년월일 : 2024. 5. 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공유수면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 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과오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4. 03. 22. ~ '24. 04.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행정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기획실-4430호('24.03.19)]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기획실-4430호('24.03.19)]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9652('24.03.15)]
-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실-6644('24. 04. 26.)]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실-12123('24. 04. 30.)]

##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 토지의 가격

###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

· 돌 · 모래의 시장가격

###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사용

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② 군수는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 ③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4조(가산금의 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제3조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5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제6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연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10 이하의 범위에

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① 군수는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방식**(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p>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p> <p>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p> <p>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p>
<p>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p>
<p>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p>	<p>가. 전기사업용수 m<sup>3</sup>/초당 연액 20만원</p> <p>나. 가목 이외 용수</p> <p>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m<sup>3</sup>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p> <p>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math>\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m/sec)}}{146^2 \times 60}</math>                  =</p>

<p>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p>	<p>가. 해당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조정하여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li> <li>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li> <li>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li> <li>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li> </ol> <p>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월 중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특별자치시·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li> <li>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li> </ol> <p>다.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p>
<p>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p>	<p>인접한 토지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p>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 <sup>3</sup> )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m<sup>2</sup>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m<sup>2</sup>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군수가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조정산식**(제6조 관련)

점용료·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사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사용료+[전년도 점용료·사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 관계법령 발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2017. 3. 21.>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⑧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6. 22., 2015. 7. 24., 2017. 3. 21., 2017. 10. 31., 2018. 12. 31., 2019. 8. 27., 2021. 11. 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2.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부터 제10호까지·제15호·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④ 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청별 특성과 점용료·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28.>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2. 28.>

④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⑤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이나 그 밖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2. 28.>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 2017. 8. 9., 2019. 6. 18., 2022. 2. 2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지 못한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제5호 및 제15조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시설을 설치하는 자
  6.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의 공익단체(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법 제13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점용료·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19. 6. 18., 2022. 2. 18.>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3.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건설과장 오현웅
연락처	(033) 330 - 2406